

섬유제품에 대한 미국의 Care Labeling Act 해설

본고는 미국의 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1983년 5월 20일 수정, 제정한 Textile Wearing Apparel and Certain Piece Goods에 대한 Care Labeling Act가 1984년 1월 2일부터 적용, 시행됨에 따라 미주지역으로 수출되는 섬유제품의 의류나 원단을 우리나라에서 제조하거나 수출하는 업자들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주지시키므로써 정확한 취급주의 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Care Labeling Act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다.

1. 정 의

1) Car label이란

정상적인 취급주의에 대한 정보와 설명을 담고 있는 영구적인 라벨 혹은 꼬리표로서 제품의 유리한 기간 동안 제품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읽기 쉽도록 부착되거나 첨부된 것을 말한다.

2) Certain Piece Goods란

가정에서 섬유제품의 의류를 만들 목적으로 필이나 롤로부터 잘라서 파는 천을 말한다. 이것에는 소매상들에게 팔리거나 소매상들이 소비자에게 파는 섬유혼용율이 확실한 자투리가 포함되나 혼용율이 불분명하고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중량으로 파는 제품”, “출처가 불확실한 천”이라고 표시된 것으로서 제품업자가 낸 10야드 길이까지의 자투리, 그리고 5인치 넓이까지의 잘라낸 조각은 포함되지 않는다.

3) Dryclean이란

보통의 유기용제(petroleum, perchloroethylene, fluorocarbon)를 사용하는 기계에서 제품이나 시험편으로부터 오물을 제거하는 상업적인 공정을 의미한다.

이 공정에서는 또한 용제에 습기를 75%RH까지 가하고 71°C(160°F)까지의 온도로 텀블건조를 하고 스팀프레스나 스팀-에어(steam-air)처리로 형태 회복시키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

4) Machine Wash란

물, 세제 및 교반을 사용하는 특별히 고안된 기계에서 제품으로부터 오염을 제거하는 공정을 의미한다. “warm”, “cold”와 같은 온도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66°C(150°F)까지의 뜨거운 물을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Regular Care란

즉흥적인 것이 아닌 관례적이고 일상적인 주의표시를 말한다.

6) Textile Product란

일차적으로 섬유, 실 혹은 천으로 만들어져서 판매되거나 재판매 되는 것으로서 일상적인 사용과, 취미나 오락에 있어서 유효하도록 주의와 보전을 필요로 하는 일용품, 직물, 편성물 혹은 기타의 것을 의미한다.

7) Textile Wearing Apparel란

신체의 어떤 부분을 덮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섬유제품으로 만들어진 완성된 옷이나 기타의 의류품을 의미하며, 양말, 메리야스류는 포함되나 신발류, 장갑, 모자 혹은 오로지 머리카나 손을 덮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른 물건들은 제외된다.

2. 술어의 사용

1) 취급주의 라벨이나 설명서에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기적인 취급주의방법을 설명하고 이 규칙의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적당한 술어를 사용해도 좋다.

2) 취급주의 라벨이나 설명서에는 이 규칙의 조건들을 만족시키는데 필요

한 적당한 술어외에 어떤 적당한 기호를 사용해도 좋다.

3) 이 규칙의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부록 A에 나타난 용어를 사용해도 좋다.

3. 이 규칙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 규칙은 미연방무역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에 정의된 “상거래”를 목적으로 섬유제품의 의복과 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으로서 그러한 제품들이 구매자에게 팔릴 때 취급주의 표시 라벨이나 이 규칙에 기술된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여 정규적인 취급주의 사항들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4. 누가 적용을 받는가.

섬유제품의 의복과 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들이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는 관련된 제품의 제조나 수입을 지시하거나 관리하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포함된다.

5.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및 관례

섬유제품의 의복 및 천의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및 관례로 간주한다.

1) 판매되기 전에 제품을 일상 사용하거나 취미나 오락에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규적인 취급주의 방법을 기술한 설명서가 구매자에게 노출되지 않은 것.

2) 판매되기 전에, 제품을 어떤 방법으로도 손상을 입히지 않고는 깨끗하게 할 수 없을 때, 그것을 경고하지 않은 것.

3) 판매되기 전에, 소비자나 전문적인 세탁업자가 충분히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표시된 정규적인 취급주의 방법 중 어느 일부가 그 제품이나 함께 세탁되는 다른 제품을 손상시킬 때 구매자에게 경고하지 않은 것.

4) 천으로서가 아니고 제품으로서의 유용한 기간동안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정규적인 취급설명서와 경고문을 마련하지 않은 것.

5) 판매되기 전에 구매자에게 노출된 모든 정규적인 취급주의 정보에 대한 알맞은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

6. 섬유제품의 의복

가. 제조업자나 수입자들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내놓을 때 쉽게 볼 수 있거나 발견될 수 있도록 취급주의 라벨을 부착해야만 한다. 만약 제품이 포장되거나 진열되거나 접혀져서 소비자들이 라벨을 볼 수 없거나 쉽게 발견할 수 없다면 취급주의에 관한 정보를 포장된 바깥면에서 제품에 단 꼬리표에 또한 나타내어야 한다.

나. 취급주의 라벨에는 어떤 정규적인 주의가 제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가를 기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섬유제품의 의복에 대한 라벨에는 세탁방법이나 드라이클리닝방법 중 어느 하나를 나타내어야 하며 두 방법이 모두 사용 가능할지라도 라벨은 이들 방법 중 하나만을 필요로 한다.

만약 제품을 어떤 방법으로도 손상을 입히지 않고 깨끗하게 할 수 없다면 그러한 것을 라벨에 기술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만약 제품이 세탁이나 드라이클리닝의 모든 방법에 의하여 손상을 받는다면 라벨은 “Do not wash-do not dryclean” 혹은 “Cannot be successfully cleaned”라고 표시되어야 한다.

다. 세탁, 건조, 다림질, 표백 및 경고에 대한 설명문은 다음 조건들을 따라야 한다.

1) 세탁

라벨에는 그 제품이 손세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계세탁을 해야 하는지를 기술해야만 한다. 또한 사용할 물의 온도를 기술해야 한다. 그렇지만 정기적인 뜨거운 물을 사용해도 제품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면 라벨에 물의 온도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Machine wash”라고 하면 hot, warm 및 cold의 물의 온도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건조

라벨에는 그 제품이 기계적인 방법이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건조해야 되는지를 기술해야 한다. 만약 기계적인 건조방법이 요청된다면 라벨에는 또한 사용할 건조온도를 기술해야 한다. 그렇지만 정기적인 높은 온도를 사용해도 제품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면 건조온도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Tumble dry”라고 하면 high, medium 및 low의 온도셋팅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다림질

다림질은 제품의 외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근거에 의하여 필요할 때나 5)항의 경고문으로서 필요할 때에만 라벨에 언급해야 한다. 다림질을 언급한다면 라벨에는 또한 사용할 다림질 온도를 기술해야 한다. 그렇지만 정기적인 뜨거운 온도에서의 다림질이 제품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면 라벨에는 다림질의 온도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

4) 표백

① 모든 상업적인 사용 가능한 표백제가 정기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면 라벨에는 표백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없다.

② 만약 모든 상업적인 사용 가능한 표백제가 정규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 제품을 손상시킨다면 라벨에는 “No bleach” 혹은 “Do not bleach”를 명기해야 한다.

③ 만약 염소 표백제를 정규적으로 사용하였을 때는 제품을 손상시키지만 비염소표백제를 사용했을 때는 손상시키지 않는다면 라벨에는 “Only non-chlorine bleach, when needed”를 명기해야 한다.

5) 경고문구

① 만약 소비자가 사용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규정된 세탁방법 중의 일부가 제품을 손상시키거나 그 방법으로서 다른 제품과 함께 1회 혹은 그 이상의 세탁을 했을 때 다른 제품을 손상시킬 경우 이러한 효과에 대한 경고문구를 라벨에 삽입하여야 한다. 그 경고문구는 “Do not”, “No”, “Only”나 다른 어떤 명확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만약 셔츠의 염색견뢰도가 좋지 않으면 라벨에는 “Wash with like colors” 혹은 “Wash separately”라고 기술해야 한다. 만약 바지가 다림질에 손상을 받는다면 라벨에는 “Do not iron”을 기술해야 한다.

② 경고문에는 라벨에 기술된 방법의 반대가 되는 어떤 방법을 기술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Dry flat”이라고 기술하였으면 “Do not tumble dry”라는 경고문을 넣을 필요가 없다.

라. 드라이클리닝

1) 일반사항

만약 드라이클리닝 방법이 라벨에 표시된다면 사용 가능한 용제 중 최소한 한 개의 타입을 또한 기술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모든 상업적인 타입의 용제가 다 사용될 수 있다면 라벨에는 용제의 타입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Drycleanable” 이나 “Commercially Dryclean”이란 용어는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만약 Perchloroethylene에서의 드라이클리닝이 코트를 손상시킨다면 라벨은 “Professionally dryclean: fluorocarbon or Petroleum”으로 표시해야 한다.

2) 경고문구

① 만약 소비자나 드라이클리닝 업자들이 사용하리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드라이클리닝 방법 중 어느 부분이 그 제품이나 함께 처리되는 다른 제품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라벨에 이 영향에 대한 경고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경고문구는 “Do not”, “No”, “Only” 혹은 다른 어떤 분명한 말을 사용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드라이클리닝 방법은 일반적으로 용제에 수분을 75%RH까지 첨가하며 71°C(160°F)까지의 고온 텀블건조를 하고 스팀프레스나 스팀-에어 처리(Steam-air finish)로 형태회복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만약 제품이 모든 용제로 드라이클리닝 할 수 있으나 스팀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면 라벨에는 “Professionally dryclean, No. Steam”이라고 기술해야만 한다.

② 경고문구는 라벨에 설명한 방법에 반대되는 어떤 방법을 필요치 않는다. 예를 들면 “Professionally dryclean, fluorocarbon”이라고 기술하였다면 “Do not use perchloroethylene”이라는 경고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없다.

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입수된 취급주의 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알맞은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1) 생략된 내용의 의미를 포함하여 라벨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맞게 때때로 세탁이나 드라이클리닝 하였을 때 그 제품이 상해받지 않았다는 믿을만한 증거.

예를 들면 만약 셔츠에 “Machine Wash, Tumble dry, Cool iron”의 라벨을 달았다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셔츠가 hot water에서 모든 타입의 표백제를

사용하여 기계세탁하고 고온 셋팅으로 텀블건조하고 저온에서 다림질하여도
상해받지 않는다면 믿을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제품이나 제품에 상당하는 시료가 라벨에 경고된 방법으로 세탁이나 드
라이클리닝 하였을 때 상해를 받았다는 믿을만한 증거.

그렇지만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라벨에 표시하지 않은 것이 경고의 문구
가 아닐 때는 상해를 받는지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셔츠에 “Machine wash warm, Tumble dry medium”이라는 라벨을
달았다면 제조업자는 그 셔츠가 hot water에서 세탁하거나 고온셋팅에서 건조
한다면 상해를 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3) 제품의 각 구성부분에 대하여 위의 1) 및 2)항에 설명한 것과 같은 믿
을만한 증거

4) 제품이나 제품에 상당하는 시료가 성공적으로 시험되었다는 믿을만한
증거

시험은 라벨에 제시되었거나 경고된 것과 유사하게 해도 좋다.

5) 현재의 기술문헌, 과거의 경험 혹은 라벨에 표시된 취급주의 정보를 뒷
받침해주는 산업적인 전문지식의 믿을만한 증거

6) 기타의 믿을만한 증거

7. 천

1)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분명하고 똑똑하게 각 필이나 롤의 끝에 취급주
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취급주의 정보는 어떤 정규적인 취급주의가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
하여 필요한지, 이 규칙의 설명을 따르는 것인지를 기술해야 한다. 필의 끝
에 표시하는 취급주의 정보는 천에 적용할 수 있는 용도설명의 정보면 된다.

8. 예외 규정

1) 포켓이 없는 섬유제품의 의복 중 어떤 품목이든지 완전히 뒤집어서도 사용할 수 있게 고안된 양면용의 품목은 취급주의 라벨을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2) 만약 라벨이 제품의 외관이나 유용성을 손상시킨다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다른 섬유제품의 의복이나 그 제품계열에 대하여 취급주의 라벨을 부착하는 것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 요청은 미연방무역위원회의 서기에게 서면으로 해야 한다. 그 요청서에는 제품에 라벨을 부착한 시료를 함께 보내면서 그 요청이 허락되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만약 어떤 품목에 상기의 조건으로 취급주의 라벨을 부착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에게는 제품에 대한 필요한 취급주의 정보를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취급주의 정보는 꼬리표에나 포장지 혹은 어떤 다른 눈에 잘 띄는 곳에 소비자가 제품을 사기 전에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된다.

4)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만약 그 제품이 가장 격심한 방법하에서 안전하게 세탁이나 드라이클리닝 할 수 있다면 영구적인 취급주의 라벨을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이 예외 규정은 다음의 모든 세탁이나 드라이클리닝 방법을 제품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에만 유효하다.

- ① 뜨거운 물에서의 기계세탁
- ② 고온세팅에서의 기계건조
- ③ 고온세팅에서의 다림질
- ④ 모든 상업적인 표백제로서의 표백
- ⑤ 모든 상업적인 용제로서의 드라이클리닝

그러한 경우 “Wash or dryclean, any normal method”라는 글귀를,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꼬리표나 포장지 혹은 어떤 다른 눈에 잘 띄는 장소에 표시해야 한다.

만약 어떤 제품이 위의 요건들을 만족한다면 그 제품은 자동적으로 취급 주의 라벨을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이 예외에 대한 요청은 신청할 필요가 없다.

9. 방염표준과의 분쟁발생시

만약 이 규칙과 방염법으로 발행된 어떤 규칙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되면 방염에 관한 규칙이 이 규칙을 지배한다.

부록 A. 표준항목의 용어해설

1) Washing, Machine Methods.

① Machine wash: 물, 세제, 교반 및 이 목적을 위하여 고안된 기계를 사용하여 제품이나 시험편으로부터 오물을 제거하는 공정, “warm”이나 “cold”와 같은 온도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66°C(150°F)까지의 뜨거운 물을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② Warm: 초기의 물의 온도셋팅을 32~43°C(90~110°F)로 함

③ Cold: 초기의 물의 온도셋팅을 29°C(85°F)까지로 함

④ Do not have commercially laundered: 특별한 방식이나, 격심한 행굼, 과도한 부하, 과도한 고온을 사용하거나 상업적, 공업적 및 기타의 방법을 사용하는 세탁방법을 채택하지 말 것. 가정에서나 자체 설비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고안된 세탁방법을 채택할 것.

⑤ Small load: 정규적인 세탁부하보다 작은 부하

- ⑥ Delicate cycle or gentle cycle: 느린 교반과 시간이 감소된 사이클
- ⑦ Durable press cycle or permanent press cycle: 낮은 온도로 헹굼 혹은 약하게 탈수하기 전의 찬물 헹굼 사이클
- ⑧ Separately: 별도로
- ⑨ With like colors: 비슷한 색상이나 명도의 색깔과 함께
- ⑩ Wash inside out: 천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을 뒤집어서 세탁할 것
- ⑪ Warm rinse: 초기의 물의 온도셋팅을 32~43°C(90~110°F)로 함
- ⑫ Cold rinse: 초기의 물의 온도셋팅을 29°C(85°F)까지로 함
- ⑬ Rinse thoroughly: 세제, 비누 및 표백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 번 헹굼
- ⑭ No spin or Do not spin: 탈수를 시작하기 전에 꺼냄
- ⑮ No wring or Do not wring: 롤러 링거나 손으로 짜지 말 것

2) Washing, Hand Methods

- ① Hand wash: 물, 세제 혹은 비누, 그리고 부드럽게 짜는 방법을 사용하여 제품이나 시험편으로부터 손에 의한 방법으로 오염을 제거하는 공정. “warm” 이나 “cold”와 같은 온도가 주어지지 않으면 66°C(150°F)까지의 뜨거운 물을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② Warm: 초기의 물의 온도를 32~43°C(90~110°F)로 함
- ③ Cold: 초기의 물의 온도셋팅을 29°C(85°F)까지의 찬물로 함
- ④ Separately: 별도로
- ⑤ With like colors: 비슷한 색상이나 명도의 색과 함께
- ⑥ No wring or twist: 주름이나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할 것

⑦ Rinse thoroughly: 세제, 비누 및 표백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 번 헹굼

⑧ Damp wipe only: 젖은 천이나 스폰지로 표면을 깨끗이 함

3) Drying, All Methods

① Tumble dry: 기계 건조기 사용, 온도 셋팅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고온셋팅에서의 기계건조기를 정기적으로 사용해도 좋음

② Medium: 건조기를 중간온도(medium heat)에 셋팅

③ Low: 건조기를 저온(low heat)에 셋팅

④ Durable press or permanent press: 건조기를 permanent press에 셋팅

⑤ No heat: 건조기를 가열시키지 않고 작동하도록 셋팅

⑥ Remove promptly: 건조시킬 때 구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꺼냄

⑦ Drip dry: 손으로 펴거나 펴지 않은 젖은 상태로 늘어뜨려 걸음

⑧ Line dry: 실내 혹은 실외의 빨랫줄이나 막대에 젖은 상태로 널어 건조시킴

⑨ Line dry in shade: 그늘에서 빨랫줄이나 막대에 널어 건조시킴

⑩ Line dry away from heat: 열이 없는 곳에서 빨랫줄이나 막대에 널어 건조시킴

⑪ Dry flat: 수평으로 놓아 건조시킴

⑫ Block to dry: 건조시키는 동안 원래의 치수가 되도록 손질함

⑬ Smooth by hand: 젖어 있는 동안 손으로 주름을 제거하고 솔기와 표면을 펴줌

4) Ironing and Pressing

① Iron: 다림질이 필요함. 온도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가장 높은 온도에서 정기적으로 사용해도 좋음

② Warm iron: 중간온도 셋팅으로 다림질

③ Cool iron: 가장 낮은 온도 셋팅으로 다림질

④ Do not iron: 다리미로 펴주거나 처리하지 않음

⑤ Iron wrong side only: 제품을 뒤집어서 다림질하거나 프레스함

⑥ No steam or Do not steam: 어떤 형태의 스팀도 사용 못함

⑦ Steam only: 프레스하지 않고 스팀만

⑧ Steam press or steam iron: 스팀셋팅으로 다리미 사용

⑨ Iron damp: 다림질 할 제품에 습기를 줘서 함

⑩ Use press cloth: 다리미와 천 사이에 마르거나 축축한 천을 사용

5) Bleaching

① Bleach when needed: 필요할 때 모든 표백제를 사용해도 좋음

② No bleach or do not bleach: 표백제를 사용하지 못함

③ Only non-chlorine bleach, when needed: 필요할 때 특정한 표백제만 사용해도 좋음. 염소표백제는 사용하지 못함

6) Washing or Drycleaning

① Wash or dryclean, any normal method: 뜨거운 물로 기계세탁 할 수 있고 고온 셋팅으로 기계건조 할 수 있으며 고온 셋팅으로 다림질 할 수 있고 모든 상업적인 표백제로 표백할 수 있으며 모든 상업적인 용제로 드라이클리닝 할 수 있음

7) Drycleaning, All procedures

① Dryclean: 일반적인 유기용제(petroleum, perchloroethylene, fluorocarbon)를 사용하는 기계에서 제품이나 시험편으로부터 오염을 제거하는 공정, 이 공정은 용제에 수분을 75%RH까지 첨가하며 71°C(160°F)까지의 고온 텀블건조를 하고 스팀프레스나 스팀-에어처리로 형태회복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② Professionally dryclean: 드라이클리닝 공정을 사용하지만, 일부 변경할 수 있는 드라이클리닝 기계를 사용하여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일부 변경한 드라이클리닝 공정, 그러한 일부 변경한 내용이나 특별한 경고는 취급주의 설명서에 나타내어야 한다.

③ Petroleum, Fluorocarbon or Perchloroethylene: 제품을 드라이클리닝 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특정한 용제

④ Short cycle: 사용한 용제에 따라 감소되거나 최소화한 클리닝 시간을 적용

⑤ Minimum extraction: 가능한 최소의 추출시간을 적용

⑥ Reduced moisture or Low moisture: 저하된 상대온도를 적용

⑦ No tumble or Do not tumble: 텀블건조를 하지 말 것

⑧ Tumble warm: 49°C(120°F)까지의 온도에서 텀블건조

⑨ Tumble cool: 실온에서 텀블건조

⑩ Cabinet dry warm: 49°C(120°F)까지의 온도에서 캐비닛건조

⑪ Cabinet dry cool: 실온에서 캐비닛건조

⑫ Steam only: 스팀할 때 누르지 말 것

⑬ No steam or Do not steam: 프레싱, 후처리, 스팀캐비닛 혹은 건조대의 막대기에 스팀을 사용하지 못함

8) Leather and Suede Cleaning

- ① Leather clean: 특별한 가죽 및 스웨드가죽 취급방법을 사용하는 전문업자에게만 클리닝시킬 것